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열 구분	학과(전공)	입학 정원 주간		
	공학	기계공학전공	35		
		전기공학전공	40		
		스마트패키징전공	30		
		소방안전관리전공	30		
		자동화시스템전공	30		
		건축과	35		
	인문 사회	경영학과	35		
		사회복지학과	60		
		경호경찰행정학과	80		
		아동보육과	30		
		Hospitality	-		
	자연 과학	호텔조리과	60		
		호텔제과제빵과	30		
		호텔외식카페창업과	30		
		반려동물과	40		
		동물보건과	30		
		바이오생명과학과	30		
	예 체 능	실내디자인과	30		
		사각디자인과	30		
		뷰티 디자 인 과	헤어디자인 전공	30	
			메이크업전 공	30	
			토탈뷰티전 공	30	
			실용음악과	50	
			실용무용과	40	
		연예매니저연수과	30		
		스포츠지도과	60		
		웹디자인과	30		
		영상콘텐츠과	35		
		웹툰출판미디어과	30		
		<b>합계</b>	<b>1,050</b>		
계열 구분	학과(전공)	입학 정원 주간			
공학	전기공학과	40			
	스미트패키징과	35			
	소방안전관리과	35			
	승강기학과	35			
	건축과	35			
인문 사회	경영학과	40			
	사회복지학과	70			
	경호경찰행정학과	70			
	아동보육과	35			
	부동산학과	30			
자연 과학	호텔조리과	60			
	호텔제과제빵과	35			
	카페바리스타과	35			
	반려동물과	70			
	반려동물보건과	30			
	바이오생명과학과	35			
예 체 능	뷰티디자인과	105			
	실용음악과	40			
	스포츠지도과	70			
	컴퓨터게임학과	35			
	영상콘텐츠과	40			
	웹툰출판미디어과	40			
	뉴케이팝학과	30			
	<b>합계</b>	<b>1,050</b>			
			학과 구조개혁에 따른 학과 신설 및 입학 정원 조정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정사유																																																				
1	<p>제4조의2(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 rowspan="2">학 과</th> <th colspan="2">입학정원</th> <th rowspan="2">계</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호텔조리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산업경영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사회복지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실내디자인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경호경찰행정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bottom: 10px;"><b>개 정 안</b></p> <p>제4조의2(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 rowspan="2">학 과</th> <th colspan="2">입학정원</th> <th rowspan="2">계</th> </tr>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호텔조리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color: blue;">경영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사회복지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실내디자인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경호경찰행정학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body> </table>	학 과	입학정원		계	주간	야간	호텔조리학과	20	·	20	산업경영학과	·	20	20	사회복지학과	·	20	20	실내디자인학과	20	·	20	경호경찰행정학과	20	·	20	학 과	입학정원		계	주간	야간	호텔조리학과	20	·	20	경영학과	·	20	20	사회복지학과	·	20	20	실내디자인학과	20	·	20	경호경찰행정학과	20	·	20	<p>전공심화과정 학과명칭 변경</p>
학 과	입학정원		계																																																			
	주간	야간																																																				
호텔조리학과	20	·	20																																																			
산업경영학과	·	20	20																																																			
사회복지학과	·	20	20																																																			
실내디자인학과	20	·	20																																																			
경호경찰행정학과	20	·	20																																																			
학 과	입학정원		계																																																			
	주간	야간																																																				
호텔조리학과	20	·	20																																																			
경영학과	·	20	20																																																			
사회복지학과	·	20	20																																																			
실내디자인학과	20	·	20																																																			
경호경찰행정학과	20	·	20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의3(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	<p style="color: blue; text-decoration: underline;">&lt;신 설&gt;</p>	<p style="color: blue;"><b>제4조의3(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b></p> <p style="color: blue;">① 본 대학의 설립이념 구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과·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할 수 있다.</p> <p style="color: blue;">② 학과 폐지로 인하여 재학생이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그 전입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color: blue;">③ 학과·전공의 설치,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에 정한다.</p>	학과 설치·통합 및 폐지에 관한 학칙 내용 추가
제8조(학기) ②	<p>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p>	<p>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을 <u>변경하여</u> <u>전</u>에 개강할 수 있고, 이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한다.</p>	학기 개시 기준변경

##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5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b>7명 이내</b>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제15조의2 (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주요사항을 관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b>7명 이내</b>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6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18%이상, 전문 교과 82%~90% 이상으로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u>2년제 최대 6학점, 3년제 최대 10학점으로 하며</u> , 전문교과 <u>2년제 최대 64학점, 3년제 최대92학점으로</u> 하고, 전문교과 시수의 50%는 실험실습을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점으로 변경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34 조 (졸업 및 수료)②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38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76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114학점 이상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b>36</b> 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b>75</b> 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b>112</b> 학점 이상	수료 학점 수정							
제 56 조의 2 (교직원의 임무)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또는 강의를 전담하게 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b>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며</b> , 필요한 경우 <b>&lt;삭제&gt;</b> 강의를 전담하게 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내용 수정							
부칙 제 2조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td>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td></tr> <tr><td>실용무용과</td></tr> <tr><td>기계공학전공</td></tr> <tr><td>실내디자인과</td></tr> <tr><td>연예매니지먼트과</td></tr> <tr><td>시각디자인과</td></tr> <tr><td>자동화시스템전공</td></tr> </table>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실용무용과	기계공학전공	실내디자인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시각디자인과	자동화시스템전공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추가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실용무용과										
기계공학전공										
실내디자인과										
연예매니지먼트과										
시각디자인과										
자동화시스템전공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8조의 3 (도서관의 운영)	신설	① 본 대학에 설치한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한다. 1. 도서관 예산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운영사항 제정

## [학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4조(학생 지원)	<p>① 심리상담, 보건의료,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학생처부속기관으로 학생지원통합센터</u>를 운영하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p>	<p>① 심리상담, 보건의료,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u>교학처에서</u> 운영하며 별도의 규정을 둔다.</p>	<p>폐지조직인 학생지원통합센터 직제기구 삭제</p>

# [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한 학사사무를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칙시행세칙은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 정확한 학사사무를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삭제
제2조(재학연한)	학칙 제6조의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u>산입</u> 하지 아니한다.	학칙 제6조의 재학연한에 휴학기간은 <u>산입</u> 하지 아니한다.	내용 수정
제7조의2(학점 인정)	<p>⑦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강좌 중 본 대학이 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1학점, 재학중 2년제 2학점, 3년제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⑧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및 기관의 창업강좌를 수강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⑨ 학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⑩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⑧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강좌 중 본 대학이 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기당 1학점, 재학중 2년제 2학점, 3년제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⑨ 창업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및 기관의 창업강좌를 수강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⑩ 학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⑪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
제8조(휴학구분)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한다.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교학처</u> 에 제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17조의2(등록금의 반환)	③ ②항의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다.	③ <u>제2</u> 항의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다.	내용수정
제18조의1(수강신청 제한)	제18조의1(수강신청 제한) 강의를 ..... ....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강신청 제한) 강의를 ..... .... 제한할 수 있다.	"
제27조(강사)	강사의 초빙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①강사의 초빙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31조(보강)	<u>제30조의1, 2항</u> 에 의한 휴·결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과장의 책임아래 반드시 보강을 실시한다.	<u>제30조에</u> 의한 휴·결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과장의 책임아래 반드시 보강을 실시한다.	"
제32조(현장실습)	③ 현장실습의 평가는 산업체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해당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평가로 한다. 단, 평가를 점수로 할 수 없을 경우엔 P로 한다.	③ 현장실습의 평가는 산업체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해당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평가로 한다. 단, 평가를 점수로 할 수 없을 경우엔 <u>에</u> 는 P로 한다.	"
제33조(출석)	8. 법정 <u>전염병</u> 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8. 법정 <u>감염병</u> 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

## [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4조(성적제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교무혁신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교학처</u> 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제47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내용 수정
제49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평점평균 1.30미만인 자는 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자는 <u>학부형</u>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특별지도를 하여 그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매학기 평점평균 1.30미만인 자( <u>이하 "학사경고자"라 한다</u> )는 경고한다. ② 학사경고자는 <u>학부모</u>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특별지도를 하여 그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유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	"
제52조(후기졸업)	①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u>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u> .	"
제53조(발급사무)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 통학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교학처에서 발급한다. <중략> 3. 수료증명서 : 당해 ..... 총 취득학점이 1학년 38학점 이상인자, 2학년 76학점 이상인자, 3학년 114학점 이상인자 <중략>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증명서 발급사무는 졸업(예정), 재학, 수료, 제적, 성적 등의 학적에 관한 증명서와 학생증, 학생 신상 문제에 따른 증명서는 교학처에서 발급한다. <중략> 3. 수료증명서 : 당해 ..... 총 취득학점이 1학년 36학점 이상인자, 2학년 75학점 이상인자, 3학년 112학점 이상인자 <중략> <u>라</u> . 제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96학점 이상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내용 수정 및 수료 학점 수정
제57조(학적부정정)	3. <u>본적지</u> 변경	3. <u>주소지</u> 변경	내용 수정

## [학칙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b>학칙시행세칙 제 33조의2</b>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p>	<p style="color: red;">신 설</p>	<p><b>제 33조의2</b> <b>(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b> ① 총장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총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p>	<p>고등교육법시행령 11조의2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p>